민법상침해행위의 위법성배제사유에 대한 리해

백 영 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민의 권리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법적으로 튼튼히 보호하여야 그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17폐지)

공민의 권리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튼튼히 보호하는것은 우리 공화국법의 중요한 사명이다. 공화국민법은 민사법률관계에서 공민들에게 물질문화적수요를 위한 광범한 권리를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를 줄뿐만아니라 만일 그것이 침해되는 경우 원상회복에 지향되는 재산적책임을 가해자에게 지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상권리와 리익을 원만히 보호해주고있다. 이와 함께 공화국민법은 국가와 사회의 리익, 공민의권리와 리익을 불법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할수 있는 재산상손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조치로서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배제사유에 대하여서도 규제하고있다.

위법성배제사유라고 할 때 그것은 침해행위가 비록 제3자에게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지만 법에 따라 행위의 위법성이 배제될수 있는 법이 정한 사유를 의미한다. 이것은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고 불법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의 항변사유로서의 작용을 한다.

침해행위가 비록 법의 보호를 받는 제3자의 민사적권리나 리익을 침해하여 표면상으로는 위법성을 띠고있는것 같이 보이지만 위법성배제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침해행위는 실지에 있어서 위법적인 행위에 속하지 않고 합법적인 행위에 속하게 된다.

위법성배제사유는 민사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위법성배제사유와 민사책임을 경감하는 위법성배제사유로 구분할수 있다.

민사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위법성배제사유는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구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가해자에게 그 어떤 민사책임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방위, 긴급피난을 리유로 위법성배제에 대한 항변을 진행하는 경우 가해자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범위를 초과하였다면 가해자는 민사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되지 못한다.

공화국민법에서 규제한 위법성의 배제사유로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있다.

민법상침해행위의 위법성배제사유에는 무엇보다먼저 정당방위가 있다.

정당방위는 공화국의 실체법제도에서 위법성배제사유로 된다. 공화국형법이나 행정법, 민법 등의 부문법제도들에서 정당방위는 위법성배제사유로 된다.

공화국민법 제256조에서는 공민이 정당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제하고있다. 비록 형법과 민법의 정당방위와 관련한 조문들은 각기 행위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리용되지만 동일한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한 규제는 일련의 동질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공화국민법 제256조의 정당방위에 대하여 론의할 때 형법에서 규제하고있는 정당방위와의 련관속에서 론의하여야 한다.

정당방위는 일련의 조건에서만 인정될수 있으며 이 경우 행위자는 위법성배제사유로 하여 손해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위법성배제사유로,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되자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

되여야 한다.

첫째로, 침해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방위행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현재 발생한 침해행위를 저지시키는 행위로 되여야 하며 둘째로, 침해행위가 반드시 비법적이여 야 하고 방위행위는 법이 보호하는 본인 또는 제3자의 리익을 보호하는것을 목적으로 하 여야 하며 셋째로, 방위의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이러한 방위는 반드시 불법침해자 에 대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방위행위가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어야만 그것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배제사유로 인정 되게 된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적당치 못한 손해를 일으켰다면 방위자는 그 에 해당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다는것은 방위자가 한 방위행위가 비록 정당방위의 대상이나 목적, 시간과 같은 조건에 부합된다고 하여도 그 방위의 한도나 방식이 부당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하거나 적당치 못한 인신상 혹은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합법적인 침해로부터 불법적인 침해에로의 변화과정을 반영한다.

공화국민법 제256조에서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것은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 민사책임을 지운다는것으로도 해석된다.

공화국민법에서 정당방위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는 목적은 모든 민사법률관계당사자들이 불법침해와의 투쟁을 자각적으로 진행하도록 추동하고 본인이나 제3자의 합법적인 민사적권리와 리익뿐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공동의 리익을 보호하자는데 있다.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지우는 민사책임은 경한 민사책임으로 리해하여야 한다. 이것은 경하거나 중한 두가지 민사책임이 다 적용될수 있을 때에는 경한 민사책임으로 선택할수 있으며 방위에 필요한 한도내의 부분적인 재산상손해에 대하여서는 민사책임을 지우지 말고 방위의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한 재산적손해에 대하여서만 민사책임을 지워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였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방위자에게 일정한 허물이 있다는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방위자가 응당 자신의 허물에 기초한 적당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상침해행위의 위법성배제사유에는 다음으로 긴급피난이 있다.

법이 보호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리익에 긴급한 위험이 닥쳐왔을 때 보다 작은 리익을 희생시켜 보다 큰 리익을 구원하는 행위를 긴급피난이라고 한다. 공화국민법 제256조에서는 자연재해나 비법침해로부터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제하고있다. 긴급피난행위는 위법성배제사유로서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된다. 공화국민법에서 긴급피난에 대하여 규제한것은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할수 있는 재산상손실을 최대로 줄이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긴급피난행위를 한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긴급피난행위가 위법성배제사유로,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되자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첫째로,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가 보다 큰 다른 재산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유일 한 방도이여야 한다. 만일 재산을 침해하지 않고도 구원할 합리적인 방도가 주어져있는데 도 재산침해방법을 선택하였다면 불법침해행위로 인정된다. 둘째로, 구원된 재산의 몫이 침해된 재산의 몫보다 반드시 커야 한다. 적은 경우에는 불 법침해손해보상책임을 진다. 그것은 침해된 재산에 대한 보상을 구원된 재산으로 충당하여 야 하기때문이다.

셋째로, 법이 보호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리익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있고 긴급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긴급피난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게 진행된 경우 비록 제3자에게 재산상손해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긴급피난행위를 한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긴급피난행위로 하여 구원된 재산의 임자들은 손해를 입은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공화국민법 제257조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 그것으로 하여 구원된 재산의 임자는 해를 입은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법이 보호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리익에 대한 현실적인 위험은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할수도 있고 자연적원인에 의하여 발생할수도 있다. 만일 그 위험이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긴급피난으로 인한 재산상손해에 대하여서는 위험을 발생시킨자가 민사책임을 지지만 위험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초래된 경우에는 긴급피난행위자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긴급피난으로 하여 취한 조치가 적절한 방법이 아니거나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손해가 초래된 경우 긴급피난자는 해당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긴급피난의 필요한 한도에 대하여서는 보호하여야 할 리익과 긴급피난행위의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와의 관계속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보호하여야 할 리익이 긴급피난행위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다 크다면 이 경우 긴급피난은 필요한 한도의 요구에 부합되는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이라면 긴급피난은 필요한 한도의 요구를 초과한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가 필요한 한도내에서 긴급피난행위를 하면 그가 보호한리익이 발생한 손해보다 큰것으로 하여 그 행위는 합법적인것으로 인정된다.

행위자의 긴급피난행위로 하여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는 그것으로 하여 구원된 재산의 임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긴급피난행위로 하여 구원된 재산의 임자를 리익을 본자라고 말할수 있다. 긴급피난행위로 하여 리익을 본자가 손해를 본자에게 보상하는것과 관련하여 리익을 본자의 보상근거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는 문제와 실천적으로 보상의 범위와 액수를 어떻게 확정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리익을 본자가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할수 있다.

우선 부당리득행위로써 그 리론적근거를 설명할수 있을것이다. 원래 자연적원인으로 인한 긴급한 위험은 리익을 본자의 재산 혹은 인신에 손해를 발생시킬수 있었지만 행위자의 긴급피난행위로 인하여 그 손실을 면하고 그것을 피해자에게 이전시킨것으로 된다. 이때 리익을 본자는 실지에 있어서 합법적인 근거가 없이 리익을 취득하였으므로 민법상의 부당리득행위에 따라 응당히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성의 원칙으로써 그 리론적근거를 설명할수 있을것이다. 리익을 본자로 하여금 일정한 손실을 부담하게 하는것은 쌍방당사자에 대하여 론의할 때 공정한것으로 된다. 반대로 긴급피난행위를 한 선의의 침해자로 하여금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하는것은 명백히 불공정한것으로 된다.

긴급피난행위로 하여 리익을 본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범위와 액수를 확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리익을 본자의 보상책임범위는 긴급피난으로 입은 재산상손해보상범위에만 국한되여 야 하며 특히 그 어떤 인신상의 민사책임은 지울수 없다는것이다.

리익을 본자가 부담하는 재산상보상의 액수는 긴급피난으로 보호된 리익과 그에 조성 된 손실의 비례관계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만일 긴급피난으로 보호한 리익이 그에 의하 여 조성된 손실을 훨씬 초과한다면 리익을 본자는 피해자의 손실전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범위와 보상액수를 확정하는 경우 사회주의도덕규범과 리익을 본자와 피해를 본 자의 경제적지위와 재산상태도 고려할수 있을것이다.

긴급피난에서 긴급한 위험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조성된 경우 위험을 초래한자는 긴급피난으로 조성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을 발생시킨자가 져야 할 민사책임은 일반적으로 재산보상에 국한되며 그 범위는 응당 피해자의 전체 손실을 보상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긴급피난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적당치 못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입지 않을수 있었던 재산상손해를 일으킬수 있다. 이 경우 긴급피난자는 그에 해당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긴급피난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긴급한 위험이 자연적원인에 의하여 초래되였다면 긴급피난자는 오직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만 해당한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리익을 본자는 피해자가 긴급피난의 필요한 한도내에서 입은 손실에 대하여 구원된 재산의 비률에 따라 적당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긴급한 위험이 제3자에 의하여 초래되였다면 위험을 초래한자는 피해자가 긴급피난의 필요한 한도내에서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전부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위험이 긴급피난행위자에 의하여 초래되였다면 그는 피난행위로 하여 발생된 재산상손해에 대하여 전부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위법성배제사유로서의 긴급피난과 정당방위는 류사한 점도 있고 일부 다른 점도 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그 목적과 시간, 한도 조건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둘 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의 리익과 본인 혹은 제3자의 합법적인 민사적권리와리익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서 그 목적이 일치하고 현재 발생하고있는 침해 혹은 위험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있는것으로서 그 시간이 일치하며 둘 다 필요한 한도내에서 진행하고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수 없다는 한도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차이점도 가지고있다. 정당방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불법침해행위에 대한것이다. 즉 정당방위는 사양하고있는 동물에 의하여 초래되는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불법침해행위에 의하여 초래된다. 이와는 달리 긴급피난에서의 위험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될수도 있고 자연적인 원인에 의하여 초래될수도 있다.

정당방위가 가해지는 대상은 불법침해행위자의 인신이나 재산이다. 그러나 긴급피난은 제3자에게 가해진다. 즉 제3자의 재산에 손실을 준다.

정당방위는 방위의 범위에서 진행된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재산상손해에 대하여서는 보 상책임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설사 필요한 한도내에서 진행 된 긴급피난이라고 하여도 손해를 입은 제3자는 긴급피난행위로 하여 구원된 재산의 임자 들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민법상침해행위의 위법성배제사유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고 그것을 민사 법률관계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리익, 공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적극 보호하 여야 할것이다.